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 중 교육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1.>

제2조(적용) 본 대학원의 학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입 학

제3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전공시험, 면접 및 서류전형에 의한다.

1. 전공시험은 필답고사 또는 구술고사로 한다.
2. 면접 성적은 교직원, 학구열, 인품, 대학성적 등을 참조한다.
3. 서류전형은 교직경력을 평가한다.

제4조(합격자 결정) 원장은 교육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여부를 사정하고 교학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자를 발표한다.<개정 2022. 11. 1.>

제5조(입학등록) 합격자로 확정된 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내에 등록을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다.

제 3 장 등록, 휴학, 제적, 재입학

제6조(등록) 학생 등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특수대학원 학칙」 제14조에 따른 수업연한 기간 동안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2. 수업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3학점 신청까지는 반액등록, 4학점 이상은 전액등록하여야 한다.
3. 삭제 <2014. 9. 1>

제6조의 2(수료 후 등록)<신설 2014. 9. 1> ① 수료자가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후, 수료 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3. 1.>

② 수료 후 등록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연구등록: 논문학위과정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연구등록은 학위청구학기까지 유효하며 등록금의 5분의 1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 2022. 9. 1.>

2. 학위과정 변경: 논문학위과정자가 비논문학위과정으로 변경한 경우 학점이 졸업요건에 부족할 때 제6조제2호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

제7조(휴학)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휴학원”에 사유서, 입역통지서 사본, 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 대학원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6. 3. 1.>

제8조(복학생의 등록) 정상등록을 마친 후, 휴학한 자로서 다음의 경우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3. 1.>

1. 당해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일반 휴학한 경우. 단, 4주가 경과한 후 일반 휴학한 경우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1.>

2. 재학 중 군입대 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으로 인하여 당해학기를 이수치 못한 자<신설 2016. 3. 1.><개정 2018. 3. 1.>

3. 당해학기 개시 후 12주 이내에 중병 등으로 4주 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휴학하게 된 경우<신설 2016. 3. 1.>

제9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제적한다.

1. 「특수대학원 학칙」 제14조에 규정된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개정 2022. 9. 1.>

2. 「특수대학원 학칙」 제21조에 규정된 휴학 기간이 종료하였는데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개정 2022. 9. 1.>

3. 소정 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재입학) ①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석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교육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제적이 의결된 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11. 1.>

② 위 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해당학기 입학지원서 접수기간중에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2. 11. 1.>

③ 재입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 연한은 처음 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 4 장 교과목 운영

제11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개강일 전까지 수강 신청서에 수강 과목을 기입하여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 과목의 변경, 취소는 개강후 3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수강 과목을 변경, 취소할 수 없다.

제12조(이수학점) ① 학생이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 학칙」 제17조제2항에 의한 추가학점 신청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매 학기 2학점 이내에 한하며 교육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재수강 이수학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 3. 1, 2022. 9. 1.>

② 논문학위과정자는 대학원 과목중에서 수업연한중 24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이수과목별 학점은 일반교육학과목 4학점 이상, 교과교육학과목 및 교과내용학과목 20학점(논문연구 2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 2014. 3. 1. 2018. 3. 1.>

③ 비논문학위과정자는 대학원 과목중에서 수업연한중 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이수과목별 학점은 일반교육학과목 4학점 이상, 교과교육학과목 및 교과내용학과목 중 26학점(연구보고 2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 2009. 5. 1, 2014. 3. 1. 2018. 3. 1.>

④ 논문학위과정자가 비논문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전공 교과목을 6학점(연구보고 2학점 포함) 이상을 추가 취득해야 한다. 단, 비논문학위 취득 희망자의 학점이 졸업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추가 학점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며, 이때 논문연구 2학점을 취득한 자는 연구보고 2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4. 9. 1><개정 2022. 9. 1.>

제13조(교과목 개설) 전공주임교수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영역별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교과목을 균형있게 개설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

제14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은 전임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분야의 과목인 경우에 본 대학원장이 그 자격을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다.<개정 2020. 9. 1.>

제15조(담당 교과목수) 1인의 교원이 담당할 수 있는 전공 교과목 수는 학기당 2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논문연구 및 연구보고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 3. 1, 2020. 9. 1.>

제16조(교수계획표) 교과목 담당자는 담당과목의 교수계획표를 작성하여 개강 1주일 전까지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수강인원) 논문 연구 및 연구보고를 제외한 교과목당 수강 인원은 3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별 학생수가 3명미만일 때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4. 3. 1>

제18조(보충과목 이수) ① 학사학위 과정의 학과가 본 대학원에 개설된 전공과 동일분야에 속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보충과목의 이수여부 및 이수 범위는 전공주임교수가 결정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3. 1>

② 보충 과목은 본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충과목의 학업성적 등급은 S(합격), U(불합격)로 표기하고 학점은 대학원 이수학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선수과목이수) ① 대학에서 이수한 학사학위 학과가 본 대학원에 개설된 전공과 동일 분야로서,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대한 선수과목 이수를 학기당 4학점(5학기에는 6학점), 총 20학점 범위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 2016. 3. 1.>

② 학사학위 학과가 본 대학원의 전공과 다른 자에게는 전공과목에 대한 선수과목 이수를 학기당 4학점, 총 20학점 범위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

③ 선수과목은 본 대학교 학부 또는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할 수 있다.

④ 선수과목의 학업성적 등급은 S(합격), U(불합격)로 표기하고 학점은 대학원 이수학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중등학교 정교사(2급)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교직 선수과목을 대학원 이수학점에 산입한다.<개정 2016. 3. 1.>

제20조(교육실습) ①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4주 이상의 학교현장 실습을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

② 교육부가 지정하는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실습을 면제한다.<개정 2013. 2. 1, 2014. 3. 1. 2018. 3. 1.>

제20조의2(교육봉사활동) ①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60시간(2학점) 이상의 교육봉사활동을 부과하여야 한다.(신설 2010. 7. 1)

② 교육봉사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울산대학교 교육봉사활동시행지침에 따른다.(신설 2010. 7. 1)

제20조 3(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①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신설 2022. 9. 1.>

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매 학기 실시하며, 외부기관 실습을 포함하여 한 학기에 1회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2. 9. 1.>

③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시행규칙」) 등을 이수한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소속학교(기관)에서 실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가 포함된 서류) 및 이수증을 확인한 후 외부기관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외부기관 실습은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후 실시한 교육에 한하여 1회만 인정한다.<신설 2022. 9. 1.>

제20조 4(성인지 교육) ①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1.>

② 성인지 교육은 특강과 온라인 강의로 구성하여 매 학기 실시하며, 외부기관 교육을 포함하여 1년에 1회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2. 9. 1.>

③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시행규칙」) 등을 이수한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소속학교(기관)에서 실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가 포함된 서류) 및 이수증을 확인한 후 본교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 특강과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성인지 교육은 본 교육대학원에서 진행한 성인지 교육의 특강과 대체됨으로 교육대학원에서 마련한 온라인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날짜와 동일한 학기에 성인지 교육 신청 및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성인지 교육 1회로 인정한다.<신설 2022. 9. 1.>

제 5 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21조(응시절차)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소정의 응시원서와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재응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4. 3. 1>

제 6 장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

<개정 2014. 3. 1>

제23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는 2학기 등록후 1개월이내에 전공주임 교수의 제청을 받아 교육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지도학생이 대필 등 부정행위로 학위를 취득하지 않도록 논문지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

③ 논문지도교수는 과다한 수의 학생지도를 지양하여 논문지도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

제24조(논문계획서 및 연구윤리서약서 제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제출 1학기전 까지 소정의 논문계획서와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경유 본 대학원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1)

제25조(논문작성) 논문작성 체제는 “석사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4. 3. 1>

제26조(학위논문 제출) 정해진 규격을 갖춘 심사용 논문초고 3부를 4월말(1학기 졸업예정자) 또는 10월말(2학기 졸업예정자)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통과후 15일 이내에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은 최종논문 3부와 저작권 위임서 1부를 본 대학원 교학행정실에 제출하고 원문 파일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1.>

제27조(논문발표) 논문발표는 전공 교수 및 관계 전공분야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제28조(논문심사) ①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교육대학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교육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연구보고) 비논문학위과정자의 학위청구 연구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4. 3. 1>, <개정 2014. 9. 1>

제 7 장 교원자격 취득

제30조(교원자격 검정기준)<개정 2014. 3. 1> 교원자격 취득에 관한 검정기준은 교육부가 정한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의거하되 교원자격취득 대상자는 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의 및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4. 2. 1, 2018. 3. 1, 2022. 9. 1.>

제31조(학부 학점인정)<개정 2014. 3. 1> 교원자격 취득 기준에 따른 학부 학점 취득 인정 범위는 전공 주임교수가 결정하여 교육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7조의 2는 199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2조 제2항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 제2항, 제3항 이수학점과 제19조 제1항, 제2항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0조의2(교육봉사활동)는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학생 및 수료생의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재학생의 경우는 제24조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수료생의 경우는 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해당학기 초에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논문학위과정자 이수학점) 2012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이 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거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이 경우 논문연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3. (비논문학위과정자 중 현직교사일 경우 이수학점) 2013학년도 이전 신입생 중 현직교사는 이 규정 제12조 제3항에 의거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이 경우 연구보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임신·출산·육아휴학 경과조치) 특수대학원학칙 제21조제2항제4호 및 본 규정 제8조(복학생의 등록)제2항 해당자의 등록금 면제는 2016. 3. 1 이후 휴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이 규정 제20조4제1항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교육 기준은 20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